고전문헌 《총통등록》의 문헌적면모

리 동 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책을 많이 찍어내여 세계에 명성을 떨치였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 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수많 은 책들을 찍어내여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 인민이 창조한 귀중한 민족고전들가 운데는 오늘까지 그 원본이 전해져오는것들 도 있고 원본은 없으나 여러 고전문헌들을 통하여 그 내용이 전해오는것들도 있다.

민족고전을 고증하고 정리하는 사업에서 비록 원문은 보존되여 전해지지 않지만 여 러 문헌책들을 통하여 고증할수 있는 자료 들을 정리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문헌유산가운데는 《총통등록》 도 있다.

《총통등록(銃筒謄錄)》은 우리 나라에서 1445년 국가적으로 규정을 다시 내오고 표준으로 설정하였던 화약무기들을 등록한 책으로서 그 원본이 오늘까지 전해지지 않고있다. 다만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다른 문헌들에 그 일부 내용들이 수록되여전해지고있을뿐이다.

《총통등록》의 문헌적면모를 밝히는것 은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의 풍부성과 당시 군사발전정형을 밝히는데서 적지 않은 의 의를 가진다.

《총통등록》의 문헌적면모를 밝히는데 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편찬자와 편 찬년대를 고증하는것이다.

《총통등록》의 편찬자와 편찬년대는《세 종실록》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고 증할수 있다.

《세종실록》 제121권 30년 9월 병신일

조에서는 《〈총통등록〉을 여러 도의 절 제사, 처치사들에게 보내주었다.》고 기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총통등록》은 세종 30년(1448)년 9월에 간행하였으며 이것을 병신일(11일)에 각 도의 절제사, 처치사들 에게 보급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함께 《총통등록》의 편찬자가 밝혀지지 않고있는것으로 보아 봉건국가 가 주관하여 간행하였다는것을 짐작할 수 있다.

《총통등록》의 면모를 밝히는데서 중요 한것은 다음으로 권수와 간행부수를 고증 하는것이다.

《총통등록》의 권수와 부수에 대하여서 는 《세종실록》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 하여 고증할수 있다.

《세종실록》제121권 30년 9월 병신일 조에서는 《…이번에 보내는 한책의〈등록〉 에는 쇠물을 부어 만드는 방법과 화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져있는만큼 나라에서 비밀로 다루는것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아주 중요하다. 늘 비밀로 보관했다 가 볼적마다 경은 혼자서만 불것이고 아전 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할 것이다. 교대할 때에는 서로 넘겨주고 넘 겨받게 할것이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조선봉건왕조는 태종13년(1413)에 우리 나라 전지역을 평안도, 함경도, 황해 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 도 등 8도로 갈라놓았다. 또한 주요요충지 들에 《진(鎭)》을 설치하고 절제사와 처치 사를 두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시 각 도의 병마절도사 8명, 수군절도사 11명, 전라도에 병마수군절제사 1명, 경상도와 전라도에 병마절제사 각각 1명이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

람》에 의하면 당시 전국적으로 29개의 《진》이 설치되여 절제사 또는 처치사를 두었다. 이들은 정3품이상의 벼슬을 하는자들로서 임금으로부터 《경(卿)》이라고 불리웠다.

이상의 기록과 력사적사실을 통하여 《총통등록》은 1책으로 되여있으며 그 부수는 절제사, 처치사들에게 한부씩 주어 비밀로 보관하게 한것만큼 적어도 50여부정도의 규모로 간행하였다는것을 가늠할수있다.

《총통등록》의 문헌적면모를 밝히는데 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책이 담고있는 내 용들을 정확히 고증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총통등록》에는 당시까지 사용되던 무기들인 총통들에 대하여 수록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세종실록》제121권 30년 9월 병신일조에는 《…그래서 그의 생김새를 그림으로 그리고 크기를 적어서 길이전하게 하였던것이다. …쇠물을 부어 만드는 방법과 화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져있는만큼 나라에서 비밀로다루는것으로서 관계되는바가 아주 중요하다.》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총통등록》에는 당시까지 우리 나라에서 사용한 각종 무기들을 그림으로 그 모양을 그리고 매 부분의 치수와 쇠물을 부어서 제작하는 방법과 화약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무기들을 기록하였겠는가 하는것은 다른 문헌들의 기록들과 대비하 여서만 보다 정확히 가늠할수 있다.

《총통등록》이 간행되던 당시 조선봉건 왕조에서는 고려시기에 사용한 무기들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리므로 《총통등록》에 수록한 무기들은 《고려사》와 《태조실록》,《세종실록》에 수록된 무기들이 모두 등록되였을

것이다.

《고려사》 제81권 지35 병1의 자료와 《고려사》제10권 세가10 선종 계유 10년의 자료, 《고려사》제103권 렬전15 박서의 자료 등 여러 개소들에서는 고려시기에 사용 한 무기들에 대하여 수록하고있다.

또한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태조실록》 제7권에서 대장군, 2장군, 3장군, 륙석화포, 화포, 신포, 화통, 화전, 철령전, 피령전, 질려포, 철탄자 등 각종 무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세종실록》 제118권 29년 11월 경신 신해일조들에서는 2총통, 3총통, 8총통, 4전통을 비롯한 각종 무기들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함께 《총통등록》이 편찬된지 26년 후인 1474년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서례(國 朝五禮儀序例)》에서는 각종 총통을 비롯한 무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과 치수들에 대하여 상세히 수록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무기들 역시 《총통등록》 에 수록된 무기들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총통등록》이 편찬된 1448년부터 《국조오례의서례》가 편찬된 1474년사이의 력사기록들인 문종, 단종, 세종때까지의 기록들에서는 해당 시기에 쓰던 무기들에 대하여 《세종실록》에서만 기록했을뿐이고 새롭게 제조된 무기들에 대하여 실지않고있다.

다만 《세조실록》 제34권 10년 8월 임오 일조에서 화포는 신라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시기에 정비되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완성된 훌륭한 무기라고 기록하고있 을뿐이다.

따라서 《국조오례의서례》에 수록한 화약무기들이 대체로 이미전에 편찬된《총통등록》에 수록된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이로부터 《총통등록》에 수록되였을 대 표적인 화약무기들에 대하여 종합하여보면 대체로 아래의 표와 같다.

무기이름	고려	조선봉건왕조	무기이름	고려	조선봉건왕조
총통완구	륙석화포 뢰등석포	완구포	철신포	신포	천신포
장군화통	대장군포	천자총통 천자화포	대질려포동	0	대질려포동
1총통	1장군	지자총통 지자화포	대신기전	0	대신기전
2총통	2장군	현자총통 현자화포	중신기전	0	중신기전
3총통	3장군	황자총통 황자화포	대신기전발화통	0	대신기전발화통
8총통	0	8전총통	화전	0	화전
4전통	0	4전총통	신재총통	0	신재총통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통등록》에는 고려시기부터 창안제작한 각종 대표적인 무기들이 모두 수록되여있다.

《총통등록》에는 매개 화약무기들에 대하여 부분품의 가지수와 사명, 조립과 다루는 방법, 길이, 너비, 두께, 직경(구경), 생김새 등의 기하학적특성과 질량, 재질등 물리적특성, 화약장입과 보관, 다루기등에 관한 화학적특성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표준이 설정되여 등록되여있었다. 또한 규격과 표준의 설정에서는 1리(0.3mm)와 1전(3.75g)을 각각 가장 작은 기하학적치수와 물리적량(질량)의 단위로 설정하고 기하학적치수와 물리적량(질량)의 단위로 설정하고 기하학적치수와 물리적량에서는 각각 1리와 1전의 틀림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밀성을 요구하고있다.

실례로 3총통(지금의 권총 크기만 한것) 의 약통길이는 1치4푼1리, 중기신전의 쇠촉 의 질량은 2전으로 규정한것을 들수 있다.

이처럼 《총통등록》은 15세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창안제작한 무기들을 종합하여 그 모양과 규격, 매 부분품의 성능과 질량,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서 술한 가치있는 문헌이다.

《총통등록》은 당시까지 우리 나라의

군사기술발전면모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문헌이다. 특히 15세기에 벌써 화약무기설계를 하면서 길이는 0.3mm, 질량은 3.75g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은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병기학발전수준이 매우 높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무기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매우 정밀하게 규격화, 표준화한것 역시당대 우리 나라의 병기학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것은 유럽에서는 18세기 중엽에 와서야 화약무기의 규격과 표준을 설정하기 시작하 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총통등록》이 간행됨으로써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각 도의 군영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규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화약무기들을 제작할수 있었으며 나 라의 국방력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여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채로 묻혀있는 가치있는 문헌들을 발굴고증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여야 할것이다.